

일본에서의 1991년 매스컴관련 명예훼손사건 판례동향 개관

- 「로스의혹보도」를 둘러싼 판결들을 중심으로 -

浜田純一

동경대 신문연구소 교수

이 논문은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연구」 1992년 2월호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1991년도에는 법원에서 보도의 자유가 논란의대상이 되었던 큰 판결은 없었으나 명예훼손사건을 중심으로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단이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에 이어 이른바 「로스의혹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수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으로 범죄보도에 대한 법원의 자세의 윤곽이 한층 명확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범죄용의자라고 해서 명예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1990년의 여러 판결에서 명확해졌으며 일련의 판결은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로스의혹보도」를 둘러싼 여러 판결을 중심으로 1991년에 있어서의 매스컴관계판례의 동향을 개관하기로 한다.

「로스의혹보도」를 둘러싼 여러판결

이른바 「로스의혹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12개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三浦和義(미우라) 씨 측은 무려 6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① 『소송난발 18 건째』라는 제목으로 미우라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安部讓二 씨의 코멘트를 인용한 「석간후지」(1989년 10월 21일자)의 기사에 대해 동경지방법원은 1991년 1월 14일 「난발」이라는 표현이 비난의 요소를 품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

② 『(외국),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무기력함』이라는 제목으로 「산케이스포츠」기사(1988년 10월 22일자)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1월 29일 판결.

③ 「주간 아사히」(1988년 11월 4일자)에 『로스의혹 내가 심판』이라는 제목의 安部讓二 씨 집필 기사를 게재·배포한 아사히신문사의 책임에 대해, 기사의 집필, 게재, 반포는 일체의 행위로서 安部씨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安部씨가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아사히 신문사에게 게재·반포 책임을 인정한 동경지방법원의 판결(1990년 7월 26일)을 취소한 동경고등법원의 1991년 1월 30일 판결.

④ 미우라씨로부터의 잡지정기구독신청을, 「원고의 기호와 관계되는 순수한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그 공표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과 함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치소에 구류중인 미우라씨를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달 호에 정정사죄 기사를 게재한 잡지, 「10인 10색」(1990년 9월호)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동경지방법원의 판결(1991년 4월 23일).

⑤ 「석간후지」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한 동경고등법원의 1991년 5월 28일 판결(상기 ① 사건의 항소심).

⑥ 『「도망」 직전,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보험금을 입수!』 라는 제목의 「주간보석」(1984년 6월 8일호) 기사에 대해 표제는 독자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은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한 동경고등법원 1991년 6월 24일 판결.

⑦ 기자로서 신분을 숨기고 구류중인 미우라씨를 면회, 그 취재결과를 「주간아사히」(1989년 6월 16일호)에 기사화하여 공표한데 대해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명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7월 29일 판결.

8 『가쓰미 씨 총격 / 미우라, 보험금담보로 돈을 빌리다/1억엔, 사회부채 구멍 메워』 라는 제목의 「아사히 신문」 석간(1988년 10월 24일자) 기사, 『차용증은 폐기직전/주변인물/회사의 장소기억』이라는 제목의 「아사히신문」 석간(1988년 10월 25일자) 기사, 『미우라의 회사, 결산을 분식/로스의혹/경시청 위촉조사로 판명 「돈이 목적」 입증』이라는 제목의 「아사히 신문」 조간(1989년 3월 21일자) 기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9월 6일 판결.

⑨ 『미우라, 살인용의로 재체포/ 가쓰미 씨 총격사건/경시청, 전 로스앤젤리스 주재원』, 『미우라씨와 대구보/면밀하게 계획세워』, 『갓가지 범죄역 「허식의 인생」 결산으로』 등의 제목 하에 게재된 「일본경제신문」 석간(1988년 10월 20일자)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9월 17일 판결.

10 『로스의혹에 메스/ 미우라 드디어 체포/스쿠프/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황족을 협박한 「악의 천재」의 반생』이라는 제목의 「주간 아사히」(1985년 9월 27일호) 기사 및 『살해된 千鶴子 씨의 주변을 맴도는 「협박마」 미우라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주간아사히」(1985년 10월 11일호) 기사에 대해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9월 30일 판결.

⑩ 미우라씨가 「살인그룹의 일원」, 「보험금사취그룹의 일원」, 「헤로인을 취급하고 있었다」, 「암루트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리를 전개한 「주간현대」(1984년 5월 12일호, 6월 16일호, 7월 14일호, 8월 4일호)의 일련의 기사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11월 28일 판결.

⑪ 『총격 !! 독점수기』, 『로스의혹사건』, 『당신은 왜 千鶴子를 살해했는가...』 등의 제목의 「주간여성」(1984년 7월 17일호)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12월 16일 판결.

이 밖에 제작년말에 나왔으나 1990년의 판례회고에서 누락된 ⑬ 『「나일살인사건」 미우라 범행의 힌트』, 『小口經, 생명에 이상없다』, 『도서관에서 예비조사도』라는 제목의 「요미우리신문」 석간(1988년 10월 21일자)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동경지방법원 1990년 12월 11일 판결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미우라씨는 작년 중에, 총격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는 메모의 존재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 조간(1988년 11월 12일자) 기사, 또한 미우라씨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보험금이 들어오면 부채를 갚는다는 각서를 넘겨 주었다」는 「경제신문」 조간(1988년 11월 16일자) 기사 등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시 새로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취재의 방법과 상당이유

이들 일련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기사는 대부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의 보도이며 또한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익목적에 대해서는 「위 사실의 적시는 보도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예도 있다(⑩판례).

한편 기사내용이 미우라 씨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가져온 경우도 많은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어 필연적인 쟁점은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혹은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로 집약된다. 각 소송에 있어서는 특히 상당이유의 존재가 다투어져 왔으나 이 경우 취재 방법에 관해 자세한 음미가 가해지고 있다. 음미의 결론 그 자체는 나뉘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상당이유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취재원의 비고에도 배려하여 취재대상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으나 취재를 통해 얻은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둘째로는 취재를 수사원만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증거취재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⑬판결에서는 수사원만이 아니라 미우라 씨의 관계자와 국회도서관과 같은 관계기관에서의 성실한 취재, 그리고 기사 게재 직전에 수사본부의 과장에게서 확인을 받는 것 등이 상당이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또 「수사 담당자 가운데 몇몇 간부의 공통의 구체적이고도 믿을 만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정보에 의거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으며 혹은 「수사당국뿐 아니라 확인을 얻어내지 못했다고는 하나 동해은행의 관계자, 구타사건의 변호인, 잡화수입판매회사인 <폴햄로드>의 경리를 알고 있는 자로부터도 취재하는 등 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가 평가되고 있다(⑧ 판결).

정보의 근거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사건에 관해 수사관으로부터 그 사건의 견해의 근거까지 듣는 일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며 또 보도의 긴급성에도 언급, 「그러한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보도기관으로서 가능한 한도내의 뒷받침을 위한 취재를 시도」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보도기관의 실상에 상당히 이해를 표시한 판단도 눈에 띈다(⑬판결).

이와는 대조적으로 ② 판결은 「경시청 수사 1 과의 복수의 관계관」으로부터 취재하고 그 담화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에 대해 「취재대상이었던 관계관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취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재했다고 하는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도 극히 불명확할 뿐 아니라 취재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뒷받침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당이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⑩판결은 취재기자가 「어느 정보원에 대해서도 그 이름 등 이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취재의 구체적 내용도 막연하고 극히 불명확하며」 또 취재내용에 있어서도 「아무런 뒷받침취재를 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등에 대해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상당이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견해의 취재에 대해서는 주장을 대폭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그 나름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증취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예가 있다(⑧판결, ⑬판결).

주목해야 할 몇 개의 판단

이 밖에 「로스의혹보도」를 둘러 싸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일련의 판결에서 특히 몇 개의 주목해야 할 판단을 볼 수 있다.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코멘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게재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나 그 코멘트의 표현과 균형을 맞추는 기술을 하는 경우 혹은 그 코멘트가 소송의 한쪽 당사자의 상대 당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견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사전체의 명예훼손적 성격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①판결).

▲ 「수사기관의 견해」로 해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에도 진실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며 견해의 내용 그 자체이다(⑬판결).

이와 동일하게, 한 여성의 살해에 미우라씨가 관여되고 있다는 취지를 피해여성의 어머니의 수기라는 형식으로 기사화했을 경우에도 이 여성의 어머니가 「기사에 나타난 대로의 심정 등을 이야기 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이 여자의 「살해에 원고가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실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⑫판결).

▲ 정정·사죄 기사를 즉각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성립이 부정된 예(④판결)는 주목해야 할 사례인데 이 판단에는 본래의 잘못이 「부주의에 의한」 잘못(Careless Mistake)이었다는 것, 「그 기사 자체가 원고를 고의로 중상하고 야유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이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은 다르나 명예훼손 기사를 집필한 추리작가가 후에 다른 신문에 「미우라씨는 결백하다」라는 기사를 집필하거나 동 기사를 게재한 잡지가 후에 미우라 씨의 수기를 게재한 사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의 산정에 고려되는 데 그치고 있으나(⑪판결) 이것이 통상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 제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간략하고 분명하게 내용을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성질상 다소 자극적으로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⑨판결)는 것이 법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보아도 좋으나 이 경우 제목과 본문은 대체적으로 합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며 「본문기사와 배치되고 제목 자체가 허위로 그것만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①판결)가 된다. 더욱이 『갓가지 범죄력 「허식의 인생」 결산으로』라는 제목에 대해 「약간 자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충격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결과

유죄판결이 언도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의 과거의 범죄력 혹은 비행력이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㉑판결)이 있으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밖의 명예훼손관계판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몇 개의 판결을 더 볼 수 있다. 이미 오랫동안 다투어져 온 야마나시의 「악덕접골사 형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동경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하여 접골원 경영자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1991년 3월 7일). 또 『건강상 요주의의 식용유, 이바라기현 내에서 나돌고 있다』, 『결함 사라다유 나돌고 있다』는 제목의 「아사히 신문」 기사에 대해 제조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의 제소가 있었는데 水戶지방법원은 1991년 1월 27일 판결에서 문제의 기사는 공정한 논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단은 동경고등법원의 1991년 11월 27일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밖에 『부동산감정사의 사술이 떠받치고 있는 「검은 저당증권」』이라는 제목으로 「포커스」에 게재된 기사와 길을 걷고 있는 동감정사의 상반신사진을 둘러싼 명예훼손·초상권침해소송에서도 강산 지방법원은 1991년 9월 3일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물리치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가 인정된 사례로는

『부채총액 420억엔 초과/학교의 채무 반환으로 흔들리는 소화(昭和)대/자산의 절반, 엉터리 경리』, 『소화대 이사장, 경비로 주식매매 /독단으로 34억엔 쏟아낸다/지금 팔면 5억엔의 손해 /권고받고 사임』 등의 제목을 붙인 일련의 「아사히 신문」 기사(1987년)에 대해 소화대학 전이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소에 대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10월 7일 판결이 있다.

이런 사례들과 함께 이른바 고도세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는 같으면서 결론이 다른 2개의 판결이 나와 있다. 하나는 「아사히 예능」 1986년 4월 10일호에 게재된 『사납금 방식을 꾸며 낸 흑막 西山正彦(니시아마 마사히코) 사장의 잔꾀』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교도지방법원의 1991년 3월 7일 판결이며 다른 하나는 월간지 「현대」 1985년 10월호에 게재된 『독점 스쿠프, 시미즈, 긴까꾸을 마음대로 농락하는 사나이, 괴상 니시아마가 교도를 좌지우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그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교도지방법원 1991년 3월 26일 판결이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원고인 니시아마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면에서 동등하다고 보아지는 이 두 판결을 비교했을 때의 커다란 차이점은 「아사히 예능」 판결에서는 기사내용에 대한서의 입증조사의 불충분성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현대」 판결에서는 취재의 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취재가 곤란한 상황 하에서 「가능한 한도 내의 정보원에 복수취재했으며」, 취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신중한 취재자세에 평가가 주어졌다는 점에 있다. 또한 「현대」 판결은 보도기관이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지적하여 「기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의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기관으로서 한편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취재의 현상을 상당히 배려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언론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소화천황」의 죽음을 둘러싼 움직임 속에서, 그것도 광고를 에워싼 소송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나가사키 신문사에 대해 우익단체인 「정기숙」 숙장으로부터 「소화천황」을 찬미하는 의견광고 게재청구가 제출된 소송으로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불성립, 그리고 게재를 승낙하느냐의 여부는 신문사의 계약자유의 문제로 판단, 일반적으로 의견광고의 게재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으로 논의될 여지는 없으나 나가사키 신문사 및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대한 총격사건과의 관련도 의심받아 화제가 되었던 소송이다. 항소심인 후쿠오카 고등법원 1991년 11월 25일 판결은 원심판결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연풍출판에 의한 이른바 「천황」 비판서적 광고게재 거부소송이다. 이것은 동사가 동경신문 「소화사특집보존판」에 「(소화천황의) 전쟁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한다」는 문안을 포함시켜 「다큐멘트 소화천황」이라는 책의 광고게재를 청구했으나 광고원고의 교정완료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광고게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동신문을 발행하는 유니치신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광고계약은 서면 거래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적으로도 애매한 영역이나 신문사의 광고게재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광고게재 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동경지방법원 1991년 11월 26일 판결도 계약성립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신문에 있어서의 선거의 예상기사의 게재공표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 동경고등법원 1991년 2월 8일 판결이 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건으로 제소된 도치기현 지사교제비공개소송에서 주민 측의 공개청구를 모두 기각한 우츠노미야 지방법원을 일부 뒤집어 부분개시를 명한 동경고등법원 1991년 1월 21일 훈결, 후쿠오카현의 교육정보공개소송에서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공개판단을 지지한 1991년 4월 10일의 후쿠오카 고등법원판결 등 몇 개의 중요한 판단이 나와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직접 매스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 「로스의혹」은 미우라가 1억 5천 5백만엔(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 가즈미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고 의혹이 많다고 해서 「로스의혹」으로 약칭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1981년 11월 17일 미우라는 가즈미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11시께 로스앤젤레스 중심 부근의 거리에서 미우라로부터 청탁을 받은 다이구보라는 사람이 백색의 소형 유개트럭을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미우라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가즈미씨의 머리를 겨냥해서 총을 쏘았다. 그녀는 1년 뒤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물적

증거가 없어 경찰은 4년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수집한 상황증거의 결과를 가지고 비로소 미우라와 다이구보를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재판에 계속중이다.